

국방부령

의 무 · 수 의 장 교 선 발 에 관 한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보건정책과)
연 월 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군의원 및 공중보건 의사 편입절차 개선에 따라 현역의무장교 편입 지원자에 대한 역종분류 선발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입영대상자에 대한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역 의무장교 선발을 위한 역종분류 대상에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장교 지원 인원을 포함

- 1) 現 병역법 상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과,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역종분류 절차를 거쳐 군의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을 공보의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의무장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직접 지원에 의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고 있음
- 2) 대체복무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형평성 제고 및 법령에 의한 편입절차 시행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의무장교 지원 후 선발되지 않은 인원에 한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편입절차를 개선

나. 입영대상자 명단 통보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1) 입영대상자 명단은 1월 10일까지 국방부로 통보하게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공의(레지던트) 선발 시험을 1월 10일 이전에 종료되도록 하고 있으나, 조기 선발시험 시행으로 수련 부실 및 진료능력 저하 우려

- 2)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 선발시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장교 입영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 입영대상자 명단 통보
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병무청,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8조제8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을 “제58조 1항 및 제8항 ,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 및 제119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조중 “제119조의3제1항제1호”를 “제118조, 제119조의3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의무장교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의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8조 1항 및 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 및 제119조의3제3항----- ----- -----.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선발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 ----- -----제118조,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단,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의무장교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